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장애 보호

모든 뉴욕 시민의 평등하고 독립적인 접근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장애 보호

뉴욕시 인권법은 개인의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의 독립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장려합니다.

알아 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항

1. 고용주, 주택 제공자, 사업주는 장애인의 평등한 사용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또는 물리적 공간을 변경하거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 또는 편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나 주택 제공자,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3. 주택 제공자, 고용주, 사업주가 이미 미국장애인법(ADA)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라도,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변경 또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그러한 변경 또는 편의가 이 법에 정의된 것과 같은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뒷면에 계속...

차별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11번으로 전화를 걸어 뉴욕시 인권위원회 연결을 부탁하거나 인원위원회 상담전화 (212) 416-0197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NYC 인권위원회 | 시장 직속 장애인 담당실

NYC.gov/HumanRights • NYC.gov/mopd

#EqualAccessNYC • @NYCCHR • @NYCDisabilities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장애 보호 모든 뉴욕 시민의 평등하고 독립적인 접근

- 4. 보조동물은 장애인을 위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은 동물입니다. 보조동물은 대중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주인과 동행할 수 있으며, 조끼를 착용하거나 특별히 허가를 받거나 보조동물임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5. 주택 제공자, 고용주, 사업주는 장애 당사자와 대화를 나누어 해당자가 어떤 종류의 변경 또는 편의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별 인식에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

- 주택 제공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주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물을 출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 식당 주인이 보조동물을 동반한 손님에게 그 동물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 고용주가 시력이 낮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차별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11번으로 전화를 걸어 뉴욕시 인권위원회 연결을 부탁하거나 인원위원회 상담전화 (212) 416-0197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NYC 인권위원회 | 시장 직속 장애인 담당실

NYC.gov/HumanRights • NYC.gov/mopd

#EqualAccessNYC • @NYCCHR • @NYCDisabilities